

보도자료

2011년 4월 25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 가. 전파기반법	최우혁팀장(2230)	나. 이용자보호과	이재범과장(2670)
[보고안건] 가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다. 이용자보호과	김광수과장(2770) 이재범과장(2670)	나. 시청자권익증진과	양한열과장(2690)

2011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이동통신·무선인터넷 데이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용량 팜토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※ 팜토셀 : 1000조분의 1(10^{-15})을 의미하는 팜토(femto)와 이동전화 통화 가능 지역 단위인 셀(cell)의 합성어로, 팜토만큼 촘촘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의미

나. (주)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(주)케이티가 가입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

-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,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시정조치와 104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
[보고안전]

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1 참조)

-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서비스(아이핀)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11. 4. 5)됨에 따라 지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

※ 기존 위원회 내부지침과 전자서명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심사기준절차 마련

나.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(첨부2 참조)

-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방송 관련 규정은 있으나,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서비스별 편성목표에 대한 사항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고함

※ 장애인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¹⁾, 수화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²⁾이 있음

다. 2010년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(별도 보도 자료 참조)

-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'2010년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' 결과를 보고함

※ 평가대상: 3G이동전화, 초고속인터넷, 휴대인터넷, Wi-Fi, 인터넷전화 및 IPTV

1)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으로서 일반 TV화면에서는 자막이 보이지 않고 디코더(Decoder) 장치가 부착된 화면에서만 자막을 수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폐쇄자막(Closed Caption)이라고도 함
2)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시청취 수단으로, TV화면에 보여지는 움직임이나 사진들에 대한 설명을 음성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DVS(Descriptive Video Service)라고도 함

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□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기준 마련 (안 제9조의3 신설)

- 법률에서 정한 지정심사 항목(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계획, 기술적·재정적 능력, 설비규모의 적정성)의 세부 내용을 규정
 - 재정적·기술적 능력의 경우, 자본금은 80억 이상이고 전문기술 인력을 8인 이상을 갖출 것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정함

※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요건 및 위원회 내부지침을 고려하여 정함

□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절차 (안 제9조의4 신설)

-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,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증

□ 본인확인업무의 휴지·폐지 절차 (안 제9조의5 신설)

-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
 - 다만,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함

□ 기 타

- 법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(안 제9조의6 신설)
- 법률로 상향 입법된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(현행 제66조의7 폐지)

□ 향후 일정

-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: '11. 4월 5주 ~
- 위원회 의결 : '11. 6월
- 법제처 심사·국무회의 의결 : '11. 7월

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□ 제정 목적

-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통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
- 장애인방송 제공 사업자 및 장르의 확대를 통한 수용자의 정보욕구 충족
- 장애인방송 편성목표 제시를 통한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

□ 주요 내용

-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대상 사업자
 -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 의무 부담방식에 따라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 의무사업자로 구분
- 의무부담 원칙 및 사업자별 편성목표
 -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방송의 공적책임 차원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함
 - 2012년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상파방송사는 2014년까지, 유료방송사는 2015년까지 최종목표 달성
- 장애인방송 서비스 이행 유도 및 점검
 - 방송사 편성실적 분기별 점검 및 점검결과 공표
 -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방송평가시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평가 강화(배점 상향 등)
- 장애인방송 편성의 적용제외 프로그램 선정
 - 프로그램 제작상의 기술적 어려움, 저작권 문제, 기타 제작이 곤란한 특수한 상황 등을 기준으로, 사업자의 소명을 토대로 하여 선정

□ 향후계획

-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(안) 공청회 ('11.5.11)
-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표('11. 5월 예정)
-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고시 제정(11. 하반기)